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3. 22(수) 10:00

제243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
교육에 관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19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마. 업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의무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
 - 1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3. 11. ~ 2023. 3. 17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구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구청장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지원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도록 명시하였음

3)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및 제5조)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4)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5) 업무의 위탁 및 비밀준수의무(안 제7조 및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, 아동·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, 범죄 조사·연구, 국제사법 공조,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